

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3호
----------	------

제출일자 : 2006. 7. 14

발의자: 탁석주,최갑현,이삼수,
김석관,이문상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9322 : 2006. 2. 8)되어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의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전환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3(2006. 2. 8. 개정)

4. 개정조례안 : 별첨

(제107회 운영위 - 부록)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같은조중 “제15조의2”
를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하고, 같은호중 “일비”를 “별
표5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중 “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
에관한조례”를 각각“「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
례」”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 ----- 제15조의3 ----- ----- ----- ----- -----</p>		
<p>제2조(정의)</p> <p>1. (생략)</p> <p>2.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p>	<p>제2조(정의)</p> <p>1. (현행과 같음)</p> <p>2.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의한 금액을 -----</p>		
<p>제 4 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생략)</p> <p>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회의수당” 2년분 상당액</p> <p>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회의수당”의 1년분 상당액</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 4 조(보상금 지급기준) ①(현행과 같음)</p> <p>1. ----- ----- ----- “의정활동비” ----- ----- ----- “ 의정활동비” ----- -----</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사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5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관련법령발취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傷害·死亡등의 補償) ①地方議會議員이 會期中 職務(第53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開會된 委員會의 職務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한 閉會중의 公務旅行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身體에 傷害를 입거나 死亡한 때와 그 傷害 또는 職務로 인한 疾病으로 死亡한 때에는 補償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補償金의 지급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本條新設 1994·3·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의한 금액
2. 여비 :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2.8]

[별표 5] <개정 2003.12.18>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제15조의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07회 운영위 - 부록)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1인
3. 의무직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④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7.6][제15조의2에서 이동 <2006.2.8>]